

대한중양내과학회 보험정책 연구비상 지급규정

2020년 2월 24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상중양학 관련 보험정책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비 보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중양내과학회 보험정책 연구비상”으로 한다.

제3조 (지급분야)

본 연구과제비는 임상중양학 관련 보험정책 분야에 제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 1) 본 학술상의 수여 자격은 대한중양내과학회 정회원이면서 연회비 미납이 없는 자로 한다.
- 2) 국내에서 시행되는 연구에 한한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연구라 함은 교신저자가 국내 연구자이고 국내 연구자의 참여도가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다기관(multicenter), 다학제간의 공동 임상연구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를 장려한다.
- 4) 한 번 수상한 자는 수상 후 2년간 지원할 수 없다.

제5조 (추천구비서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대한중양내과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1통 (소정양식)
- 2) 이력서 1통
- 3) 사진(명함판) 2매
- 4) 3년간의 연구업적, 계획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저서 및 논문 등의 목록 2부)

제6조 (연구과제 심사)

연구과제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여 선정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연구 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수된 연구주제의 적절성을 보험정책위원회에서 자문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7조 (연구비 지급 세부 내역)

본 연구비는 대한중양내과학회 정기심포지엄 석상에서 1인(팀) 1,000만원 또는 2인(팀) 각 500만원(총 1,000만원)을 수여한다.

제8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 1) 연구진행사항은 다음 해 정기심포지엄에서 개최되는 보험정책 세션에서 발표한다.
(연구결과는 수상 후 3년 이내에 대한중양내과학회 학회지 또는 SCI, SCIE 등재지, 국내학술등재지에 대한중양내과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여야 한다.)

- 2) 연구 결과물 내용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3) 연구 결과물이 게재된 학술지, 학회지, 교내 연구지 등은 3부 이상 학회에 제출
- 4) 대한종양내과학회 지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함.
“본 연구는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The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제9조 (연구비 환수)

제8조 연구비 수혜자 의무를 위배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전액을 환수 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본 규정은 대한종양내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